

Comparative study on Child Right Policies in Europe

Park, Sun Young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Background: As Korea is facing to establish the 7th National Youth Policy Plan to be implemented from 2023, a national youth policy is needed to promote youth rights from long-term perspectives. This is because guaranteeing and promoting youth rights from the changes in life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ust be considered to realize the basic ideology of the Youth Work Act in Korea.

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analyze the children's and youth rights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uncil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agenda of the Korean rights policy.

Methodology: The research method was a qualitative study, and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related literatures and documents.

Findings: The analysis of the 2011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confirmed the willingness to actively protect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the risk factors of social change. For the first time, the European Union's child and youth rights agenda required a child and youth-friendly judicial system, and in the post-2020 policy,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young people as members of society, and the policy to protect them from social threats and rights violations changed after COVID-19.

Conclusions: Firstly in Korea, like the European Union,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young people and the level of policy on them should be treated as the top priority policy level reflected in all policies. Secondly, in order to promote rights, it is important to ensure policy diversity and substantiality with long-term perspectives. Lastly, what is needed more than anything else to promote children and young people's rights is to recognize children and adolescents as important members and partners in society.

Keywords: young people, children, rights tight policy. EU, the Council of Europe

Corresponding Author: Park, Sun Yo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Education and Youth Guidanc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1239, Yangjedae-ro, Songpa-gu, Seoul, 05541,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2-5191-9047>

Email: sypark@knsu.ac.kr

Received: September, 26, 2022 Revised: September, 30, 2022 Accepted: September, 30, 2022 Publication: September, 30, 2022

유럽의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비교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배경: 한국은 2023년부터 실시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초래한 크고 작은 삶의 변화로 부터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상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목적: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권리정책의 의제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2011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를 분석한 결과 각각 시기별, 주체별 권리 정책의 특징이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위협요소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권리 의제의 경우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를 요구하였고, 2020년 이후 정책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의 위협요소와 권리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 첫째, 유럽연합처럼 한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 수준이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에 반영되는 최우선 정책이나 권리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다양성과 동시에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주요어: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청소년정책

교신저자: 성명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연구동 225

ORCID: <https://orcid.org/0000-0002-5191-9047>

Email: sypark@knsu.ac.kr

투고일: 2022. 9. 26

심사일: 2022. 9. 30

게재확정일: 2022. 9. 30

발행일: 2022. 9. 30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989년에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제인권조약이다[1].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으며 헌법 제 6조에 의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대한민국의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인권법이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196개의 국가가 이 조약에 비준하여 국제협약으로는 가장 많은 비준 국가를 보유한 국제 인권법으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연합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법과 정책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2].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의 개념 즉,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를 의미하며 이 정의에 의하면 인권은 다양한 권리와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고 명시하여 인권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헌법을 근거로 청소년인권은 청소년의 기본권(다양한 권리)과 자유, 청소년의 존엄과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인권의 개념과 맥락 하에서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내용을 아동의 삶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적 국가심의를 받아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슈를 파악하고 권고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절대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여가 및 문화생활에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권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관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생존권과 발달권에 있어 심각한 침해를 겪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관한 130여개의 방대한 협약 이행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지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협약 이행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여전히 인권 영역 전반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의 개정도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체벌 등 아동폭력, 성착취 예방 및 대응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여 아동학대와 폭력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보고되고 있다[5]. 이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대를 구분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를 위한 사업도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권의 대표적 권리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도 코로나 이후 교육 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권리 침해에 놓여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6].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과 참여권 확대는 물론, 다문화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아동 청소년 등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조치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7].

한국은 2023년부터 실시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바,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청소년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미치게 될 예측 불가한 변화 이외에도 COVID-19가 초래한 크고 작은 삶의 변화로 부터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상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다양한 가족구조의 증가와 역기능 가족의 증가,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매체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위험성 확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시화와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도 청소년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예측된다[8].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 사회 양극화 심화, 기후 위기로 인한 삶의 질 변화 등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확률이 높다.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역시 전술한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등의 이슈가 정도만 다를 뿐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이민자와 난민 가정 출신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권침해와 권리이슈가 존재해 왔다[9]. 한국은 제

1,2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부터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실시 중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의 주요과제로서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온바 있다[10].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청소년 정책, 한국에도 EU Youth Strategy(이하 EU 청소년정책) 라는 이름으로 널리 소개된 바 있는 유럽연합 청소년정책의 시기별 실시에 있어 청소년의 권리증진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사업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어 청소년 권리 증진에 관한 범국가적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청소년정책(EU Youth Strategy)은 2018년 유럽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2019년에서 2027년까지의 유럽연합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참여를 증진하고 사회적이고 시민적 참여를 강화하며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권리증진을 추구하는 유럽연합 공동의 청소년정책이다[12]. 여기에는 3가지 주요 키워드가 포함되는데, 참여, 연결, 권리부여이며 11가지 유럽 청소년목표를 제시하고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물론 EU 청소년정책은 EU 2020 Strategy(2010년 유럽연합 전략)정책의 일부로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연결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의 인권이념을 배경으로 한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 내 모든 정책과 법은 모두 리스본 조약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13].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각각 별도의 아동과 청소년 권리 증진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2011년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유럽연합 아동권리 의제), 2020년에는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유럽연합 아동권리 전략)을 통해 관련법들과의 협력 속에 권리 영역을 확대시켜오고 있다[14]. 이와는 별개로 유럽평의회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22-2027) “Children’s Rights in Action: from continuous implementation to joint innovation” 을 소개하며 향후 6년 간 권리 증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다[15]. 다시 말해 시대별로 권리증진과 보호의 영역이 변화하고 있고 권리 증진과 보호가 독립적인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 변화해오고 있는 유럽의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인권과 다양한 권리 증진을 위한 유럽 아동과 청소년 권리 침해 상황을 이해하고 현재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청소년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분석

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주요 영역으로 제시될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이론적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구성하였다.

첫째,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다양한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의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청소년 권리 증진 정책과 유럽, 유럽연합의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향후 한국 국가청소년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청소년 권리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선택 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내용분석은 실증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관심 주제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는 이미 제시되어 있는 공식 문서, 즉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아동과 청소년관련 권리정책의 내용과 현상을 세분화하고, 더 나아가 깊이 이해하고 분석 한 후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질적 내용분석 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 18세 이하의 아동을 의미하고, 유럽연합의 아동관련 정책이 한국의 청소년 연령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child'를 문서의 맥락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 모두로 해석하고 이해하였다.

II. 유럽의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보호 정책

1. 시대별·주체별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요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즉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속에 포함하여 강화하고 증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아동과 청소년권리 증진은 리스본 조약(2009년 발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유럽연합 기본권 권리헌장 제24조의 아동과 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익이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힌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16]. 리스본 조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강조는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상태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과 원칙이 유럽연합의 정책에 포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차원에서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2006년 유럽평

의회(Council of Europe)가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유럽연합 정책(Towards an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 기준을 제시하였고 회원국의 관련 정책에서 의무적으로 이러한 인권의 이념과 가치가 담길 수 있도록 요구해오고 있는 것이다[17].

2010년에는 유럽전략 2020(Europe 2020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21세기 유럽의 사회경제적 시장에 대한 비전은 물론 좀 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섭적인 경제건설을 위한 즉, 고용율과 생산성의 증대, 사회통합 강화와 지구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리스본 조약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 증진을 강조하였다[18]. 이를 근거로 유럽위원회는 유럽 전략에 맞추어 인권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정책과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동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높은 수준의 복지 지원을 통해 22세기의 유럽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 2011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유럽연합 아동권리 의제), 2020년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유럽연합 아동권리 전략)을 발표하며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권리의 증진과 보호방향을 제시하였다[19][20]. 가장 최근인 2022년 2월에는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평의회가 유럽연합의 아동권리 존중을 포함하고 극대화한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신 아동·청소년 권리전략)을 발표하였다[21]. 한국과 달리 모든 국가 정책에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차별화되고 단독권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침해가 가장 컸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 증진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한국은 국가청소년정책안에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 영역이 중요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단독 권리 증진 계획이나 복고서는 존재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아동과 청소년 권리 증진에 관한 관점과 책임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한국의 국가청소년정책과는 별도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과 단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2011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유럽연합 아동권리 의제)

2020 유럽연합 전략(EU 2020 Strategy) 발표 이후 2011년 유럽연합은 후속조치이자 관련 정책의 실행계획 중의 하나로 2011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다시 말해 유럽연합 아동권리 의제를 발표하였다[22]. 유럽연합 아동권리 의제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포함된 기본인권의 이념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인 사법제도 개혁, 아동 권리 증진

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아동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만들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 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이 역시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아동의 인권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 하고자 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유럽연합 아동권리 의제는 European Forum on the Rights of the Child, 즉 유럽연합 아동권리 포럼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되 특히나 아동인권 관련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의회, 더 나아가 유니세프와 해당 당사자인 아동, 유럽평의회와 각종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과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24]. 여기에 유럽 전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가치를 포함하여 보편적 아동의 인권의 가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강조하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친화적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하여 권리 증진과 보호 영역을 유럽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로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강화이다[25]. 즉, 양질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22세기 유럽의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이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관점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이 개인의 발달과 행복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거시적이고 관점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1 유럽연합 아동권리 의제는 몇 가지 일반원칙과 세부 실행과제로 구분이 되는데 나누어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가. 일반원칙

유럽연합 아동권리 의제가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과 법제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는 리스본 조약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아동권리 증진이 포함되어야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뜻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고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반원칙은 들은 다음과 같다[26].

첫 번째 원칙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2010년 9월에 제시된 기본권 헌장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fundamental rights check 기본권 체크' 기준에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fundamental rights check 기본권 체크' 이 원칙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와 협력하여 기본권 헌장의 개정 시 아동 권리 증진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회원국들은 기

본권 헌장 제 51 조 (1)에 의해 유럽연합의 권리 관련 법률을 국내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즉, 헌장 제 24 조에 의해 보장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제시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국내법 제정 시 모든 초안에서 '기본권 체크'를 통해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7].

본래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의미하는 기본권은 정치적·사회적·절차적 권리에 대한 기본적 보호기준이 되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 재산, 개인 사생활 등에 대한 보호와, 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애인으로서의 권리, 유럽 시민으로서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나이와 장애, 인종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도 포함된다[28]. 이런 관점에서 유럽연합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권 체크리스트 영역에는 크게 6가지가 포함되는데 인간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시민권, 정의가 해당된다. 다만 기본권이라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fundamental rights check 기본권 체크' 리스트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의 정책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29].

- 아동·청소년 (또는 그룹)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인지 혹은 제한하는 정책인가? 만약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 해당 정책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가?
- 정책과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이 있는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어떤 내용을 증진하는 정책이자 사업인가?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상충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
- 해당 정책이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 즉 아동·청소년의 필요, 연령 성숙도를 반영한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에 기여하는가?

두 번째 원칙은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2006년 유럽위원회의 점검결과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 수립 모니터링에 필요한 믿을만하고, 비교할만하며 공식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현존하는 권리 관련 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리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 대상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자료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30]. 정책과 사업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위원회(EU Commission Fundamental Rights Agency)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아동·청소년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고 존중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도 개발되었다[31]. 즉, 유럽연합 전역에서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화 하는 사례는 역시 한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작과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인권실태 조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도 비슷하게 관련 자료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시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데이터의 상시 수집과 관리 해당부서로의 배포, 효과성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등은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마지막 원칙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에 대한 원칙이다[23]. 유럽위원회는 지속적인 유럽연합 포럼운영과 제도 개선 정책실시를 통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2]. 개별 국가의 국내법과의 상충은 물론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유럽 전역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이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은 한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부처 간 협력,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나. 인권증진 유럽연합 세부 과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유럽연합 세부과제는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사법 시스템을 지금보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은 유럽연합 정책의 핵심 항목이며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이를 위해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33]. 아동과 청소년은 여러 이유로 사법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양육권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로 심의를 받거나, 범죄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더러는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동들은 사법제도를 경험하게 되고 이때 권리침해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또 아동과 청소년들은 법적 대리인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리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정당하지 못하게 대변하거나 혹은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의 개혁이란 법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호되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럽연합은 개별 회원국내에서 이러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대상을 구분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고, 육체적이나 신체적 건강을 위협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거나, 성폭력 피해나 학대를 경험한 경우, 난민 가정의 자녀나, 실종으로 보고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교육권 침해도 우려되며 응급 복지 지원도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종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응급전화(116 000)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전역에서 통용되는 번호이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과 청소년, 그루밍을 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학교 폭력 경험율도 적지 않아 이런 사례와 대상별로 권리를 보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34]. 디지털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도 대상별로 세분화된 전략 중의 하나이다[35].

셋째, 유럽연합의 아동·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세부전략이다[36].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도 유럽연합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5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기도 하는 것에 대한 세계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 매년 아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최대 2 백만 명의 어린이가 폭력 관련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해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전쟁의 위기가운데 있는 아동 청소년,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도 유럽연합 아동 권리 의제의 중요한 세부과제이다[37].

마지막 세부과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에 관한 것이다. 2008년과 2009년에 실시된 두 차례의 유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76%는 자신에게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79 %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할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8]. 유럽연합이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8 %는 유럽연합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권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답하기도 하여 권리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인식은 물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권리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참여 강화는 유럽연합 아동청소년권리 의제의 마지막 세부과제인 동시에 한국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참고해야하는 당사자 권리 인식 확대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2020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유럽연합 아동권리 전략)

유럽연합은 아동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유럽과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아동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차별과 비난 또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9]. 유럽연합의 아동 인구는 전체 인구 중 5분의 1에 해당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3분의 1이 아동인구에 해당하므로 유럽연합 아동권리 정책은 단순히 유럽 내에서만이 아니라 아동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2011년 이후 10년 만에 2020년 아동청소년 권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10년 전에 발표된 아동청소년권리 의제보다 2020년 아동·청소년권리 전략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를 이전 보다 강조하였으며 특히 처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물론 자연환경 즉,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역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권리 증진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였다[40]. 여기에는 차별과 불공정으로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제도 포함된다. 2011년 아동·청소년 권리 아젠다의 일반원칙을 계승하여 유럽 안에서의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거나 적용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원칙과 이념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한국의 모든 국가 정책의 방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자 과제이다.

2020 유럽연합 아동 권리에 관한 전략은 아동이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41]. 유럽연합이 아동을 위해 무엇을 할 계획인지를 아동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것은 기존의 정책과 구별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아동 친화적인 버전의 아동 권리 전략이 구현되기 위해 아동의 참여를 이전 2011 아젠다에서보다 훨씬 강화하였고, 이 전략의 홍보와 배포에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단지에도 사용된 언어, 이미지 및 예시에 대해서도 아동 친화적 설명과 표현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는데 다양한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아동의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의도하였다. 한국 역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정책을 세우고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권리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본인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친화적 문서와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법률 용어가 한자에 기반하고 있어 아동친화적 언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대 한국어 중, 아동과 청소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표현으로 권리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친화적 버전을 포함한 유럽연합 아동권리 전략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정치·사회 참여: 적극적인 시민과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권한 부여

2000년대 이후 유럽 곳곳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와 인권 침해에 대하여 거리에서 대응하는 모습은 아동이 적극적 시민이자 변화의 주역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지만 실제 유럽 청소년은 18세가 되어서야 선거권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 사는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에서 적극적 구성원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변화를 촉진하고 실행하며 정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42]. 유럽 청소년들에게 이미 유명한 EU Youth Dialogue 라는 프로그램은 16에서 30세에 이르는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청소년의 의견들이 제법 많이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은 4명중 1명만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스포츠와 문화 예술 활동, 사법제도와 이민 제도 또는 보건 분야에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이, 지역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아동, 아동 전문가, 미디어, 대중,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아동의 정치·사회 참여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을 지원하도록 하였다[43]. 이를 통해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며 정치·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44].

- 유럽의회와 아동권리 단체와 공동으로 유럽연합 아동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존하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 수준의 아동 참여 구조와 연계하고 모든 의사결정의 수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포함할 것
- 유럽 기후 협정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기후, 에너지, 환경교육에 기후연대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이 기후 협정의 실천과 유럽 그린 딜(EU Green Deal)의 구현에 있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
- 기본권 헌장과 다른 유럽연합 주요 제도에 아동 친화적인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며 아동 청소년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나. 사회 경제적 포용, 건강 및 교육: 빈곤 퇴치와 포용적이고 아동 친화적인 사회, 건강 및 교육 시스템 촉진

모든 아동은 양질의 생활환경과 수준을 누릴 권리와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협에 놓여 있어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숫자도 상당하다[45].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2020-2025 성평등 전략, 통합 및

포용에 대한 실행 계획 2021-2027, 2013년 유럽위원회 권고안 ‘아동에 대한 투자: 불이익의 고리 해제’, 청년 보장 강화에 대한 의회 권고, 학교 과일, 야채 및 우유 계획, 유럽 위원회, 아동 비만에 대한 EU 행동 계획(2014-2020), 공정하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품 시스템을 위한 Farm to Fork 전략,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한 협력 강화에 관한 위원회 권고 등을 아동·청소년권리 증진 계획과 연계하였다[46]. 즉, 사회 전반의 모든 정책과 제도에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친화적 사회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두 번째 영역은 기존 아젠다와는 다르게 아동과 청소년의 의료권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적 차원의 의료지원 필요에 대한 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20 아동·청소년 권리 전략의 주요 특징이다[47].

- 아동·청소년 빈곤 퇴치와 동등한 기회 보장 : 유럽 아동권리 보장제를 통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조기교육 참여율 증대, 비교과 활동을 통한 교육 지원, 건강과 주거지원 등)
-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권 보장 : 각종 백신(특히 코로나 19 백신)을 통해 영유아기는 물론 유년기 건강 증진 확대. 소아암 예방 및 적극적 치료, 신체적 건강 및 정신 건강 지원 강화
- 모든 아동 대상의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제공 : 아동의 모든 상황으로 인한 교육 기회 차별 금지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증대와 학업 중단 예방, 중등학교 재학율과 졸업율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지원

다. 아동폭력 근절과 보호 강화: 폭력 없는 사회 조성

아동은 가정과 학교,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혹은 사법제도하에서도 폭력 피해자, 목격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23개 국가만이 체벌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 아동 폭력이 용인되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폭력은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동을 폭력으로 부터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48]. 그러므로 국가적이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통합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성하고 강화하는 것은 2015년 아동권리에 관한 유럽 포럼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가적 아동보호 시스템으로 2011년 만들어진 116 000 및 116 111 응급구조를 위한 핫라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크고 작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4분의 3정도에 해당하는 아동은 2세에서 4세로 영유아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럽에서만 5명 중 1명의 아동이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49]는 조사는 매우 놀라운 결과로 이중 4분의 일은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와도 관련이 있다[50].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백만 명의 여성과 여아가 할례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만도 60만 명이나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았다[51] 이런 외부적인 폭력 외에도 아동의 또래 간 폭력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PISA 결과에 따르면 23%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한 달에 한번 이상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성 소수 청소년 중 15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절반이 넘는 51%가 학교에서 또래 간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에는 전 세계 난민 중 12%가 아동이었는데 이들이 유럽연합에 입국하기 전에도 전쟁이나 분쟁, 착취, 인신매매,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이런 종류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2]. 그러므로 폭력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 경보 시스템이다. 아동 경보 시스템을 작동하여 실종된 아동을 공조하여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 시스템은 아동의 실종이나 납치의 경우에 사용되며 email, 문자 메시지, 고속도로의 전자 표지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정보와 같은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적극적 홍보와 수색을 벌이기도 한다. 2021년 기준 16개의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과 공동체계 구축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 운영: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필요에 부응하는 사법 시스템 가동

아동은 피해자, 가해자, 증인, 피고 등으로 여러 가지 재판이나 심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안전하고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과 심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연령과 필요에 따른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전문가들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배려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동에게 충분히 본인의 권리대로 의사표현과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일수록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노출될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재판이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정보도 부족하며 구제사례도 더 적다고 보고되었다[53]

코로나19는 아동과 관련한 재판이나 심의에 있어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판과 심의가 멈추거나 연기되거나 소년원에 있는 경우 가족의 면회가 금지되는 등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또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정보가 제한되고 보

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아동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라도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결정이어야 하고, 만약 구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한 절차와 제도의 개선이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이다. 한국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아동친화적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실태보고서를 통해 일부 예측할 수 있긴 하지만 유럽연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층위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응과 여러 회의와 절차에서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충분히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마. 디지털 정보화 사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환경을 누리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아동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온라인에서 놀고 창조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하며 그들을 표현하고 교류하기도 한다. 그 결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국가와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하기도 한다. 아동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디지털과 관련한 기술과 환경에 급속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디지털 세계라고 볼 수도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디지털 장비는 아동의 학습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위험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되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되었다. 부모나 보호자의 무관심과 통제부족으로 인해 아동들은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3분의 1 가량의 여아와 20% 가량의 남아들이 유해환경에 지난 1년 동안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험에 있다고 보고하였으며[54] 15세-17세의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는 15%가 그들의 정체성으로 인한 사이버상의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55]. 이에 유럽연합차원에서 아동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강화된 처벌을 예고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온라인 과다 사용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과다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의력 결핍, 시력 장애, 신체 활동 부족의 문제도 생기게 될 수 있어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과 문화적 사회적 생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온라인 과다 사용도 문제가 되지만 10% 가량의 아동과 청소년은 온라인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로 학업과 다양한 활동에의 심각한 제약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56]. 그러므로 온라인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 해결도 필요할 뿐 아니라 부족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인프라 문제로 인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크게 벌어진 교육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미디어 관련 부처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였고, 디지털 교육 실행계획(2021-2027)을 통해 디지털 문해력 확산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과 디지털로 인한 차별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한국도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이를 권리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바. 글로벌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위기와 분쟁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권한을 부여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 기본 계획이며 전 세계 모든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건강권 증진은 물론 모든 종류의 폭력과 남용, 무시와 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문명사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아동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절대적 부족과 영양 결핍,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배제는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의 문제까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더 많이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조혼이나 할례 등의 폭력에 매우 어린 나이부터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분쟁지역에서는 소년병으로 징집되기도 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웰빙을 심각하게 침해받는다. 여아와 남아 모두 성적인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빈곤과 사회적 배제, 차별 등의 이유로 약 5만 2천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지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심각한 영유아 인권유린도 우려된다. 팬데믹 기간에 약 1억 6천만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7] 또 전 지구의 9.6%에 해당하는 아동이 아동 노동의 피해자로 추측되기도 한다.

이에 유럽연합은 양질의 안전하고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건강권 확보 및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폭력적 분쟁에서 아동을 보호하여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 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 지원 확대, 인도적 지원 자금의 10%를 교육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를 정상화하는 일에 사용하며,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 입법과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지역에서 아동 노동을 감시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노동 감독 시스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58]. 권리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관점은 바로 글로벌 시민성과 글로벌 시민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권리와 글로벌 시민성의 관계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4. The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22-2027) : 유럽평의회 신 아동 권리 전략

유럽평의회는 2022년 2월 23일 장관 위원회에서 차기 유럽평의회 운영을 위해 새로운 아동 권리 전략 (2022-2027)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유럽 건설” 프로그램의 틀에서 유럽 전역의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성공적인 전략 중 네 번째로 아동과 청소년을 모든 유럽평의회 업무의 중심에 두겠다는 오랜 약속을 위한 이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신 아동권리 전략은 10개 회원국의 220명의 아동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협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6 가지 우선순위 영역을 제시했다[59]. 특히 UNCRC의 4가지 일반 원칙 - 차별 금지(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3조),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6조) 및 들을 권리(12조) 등 모든 우선순위 영역은 UNSDGs의 특정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접근 및 조치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위기 및 비상 상황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여섯 번째 우선순위 영역이 포함되었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권리, 분쟁 지역에서 보호받을 권리, 이주 또는 강제 이주 또는 공중 보건 위기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구체적 영역은 다음과 같다[60].

- 모든 아동을 위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 모든 아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제공과 포용사회 건설
- 모든 아동을 위한 안전한 기술 사용
-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 친화적인 사법제도 운영
- 모든 아동의 의견존중
- 위기 및 긴급 상황에서의 아동 권리 우선

유럽평의회 회원국 아동은 유럽인권협약(ECHR),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및 기타 국제 및 유럽 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권리에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신 아동·청소년 권리전략은 인권의 이러한 모든 범주를 포괄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유럽평의회와 회원국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61]. 현 사무총장의 임기동안인 2021-2025년 유럽평의회는 차별을 방지하고 아동을 포함한 취약 집단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수민족, 성소수자, 난민 및 이주민, 특히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와 남녀 평등 증진이 포함되며 특히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란자로테 협약)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통해 아동의 성적 착취에 대한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62]. 법률, 가족 및 사회 보호 서비스, 사법,

교육 및 보건 시스템의 취약성은 인권 침해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암묵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인권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회 규범들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 권리 침해를 받게 된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신 아동·청소년 권리 전략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대우받고 인식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냈다 즉, 18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나 복지의 수혜자안 동시에 권리의 주체이자 변화의 주체라는 인식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1990)이 비준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러 진전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법적 보호의 허점 뿐 아니라 법과 관행의 간극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여전히 매일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아동의 웰빙, 안전, 교육에 대한 접근, 동등한 기회, 의견을 들을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럽평의회는 아동이 시급하다고 제시하는 권리 침해의 문제를 제시하면,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 혹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놓고, 그런 과정과 절차에 아동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를 공지하도록 하였다. 가령아동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정서적 또는 심리적 폭력, 젠더 기반 폭력 및 방치를 방지하는 것과 입법 수준(예: 의회) 및 불만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아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아동과 성인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면 유럽평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다[63].

- 어른들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아동 친화적 보고서와 민원 처리 절차로 변경
- 아동의 심리정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아동 의견수렴의 날’ 선정
- 또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 프로그램 확대

Ⅲ. 논의 및 결론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는 시대별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을 분석하고 얻은 논의 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대상 권리 정책이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와 관련이 있다. 더욱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증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관

런한 타부서나 다른 정책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물론 관련 연구자들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책 연계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사실상 자신의 권리 수준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대중적으로는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처럼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가 본인의 권리 수준과 국가정책의 내용 등을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참여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연합의 청소년 참여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청소년 참여가 자칫 정치참여의 영역으로 잘못 오해되거나 축소되어 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와 권리의 올바른 관

〈표 Ⅲ-1〉 유럽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 비교

정책이름	기간	주체	주요 내용 및 특징
2011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1-2019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 체크리스트 통해 모든 유럽연합 기본권 현장에 아동·청소년 권리영역 포함 -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 운영 - 대상별 주제별 권리 보호 구분 - 권리보호와 증진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 - 아동·청소년의 참여 강화와 필요성 인식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0-현재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정치·사회 참여와 권한 부여 - 사회·경제적 포용 및 건강과 교육 평등 촉진 - 폭력근절과 폭력 없는 사회 환경 조성(응급 전화 정책 계승) - 이전 정책의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 확대 개혁 -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 - 글로벌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코로나19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적 협력 도모)
The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22-2027	유럽평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을 위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 모든 아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제공과 포용사회 건설 - 모든 아동을 위한 안전한 기술사용 -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 친화적인 사법제도 운영 - 모든 아동의 의견존중 - 위기 및 긴급 상황에서의 아동 권리 우선(코로나19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홍보는 물론 청소년 참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소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은 시기와 주체에 따라서 특징이 있으며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정책에서도 그 이념과 내용이 계승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표 III-1>은 각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기별, 주체별 권리 정책의 특징이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위협 요소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였다. 한국 역시 코로나19를 경험하였고 이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산발적인 정책과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까지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2022년이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소개될 정책에 담길 수는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권리 보호는 피해 발생 시 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유럽연합이나 유럽평의회 처럼 권리 관련 정책을 단독으로 수립하고 있다면 세부 시행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참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명시하다시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참여,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나의 권리와 참여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상호존적인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한 권리 증진이 자칫 개인 이기주의나 특정 집단의 횡포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에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공동체의 식 함양을 위한 시민적 권리와 책임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제도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제아동인권센터[웹사이트]. 유엔아동권리협약. (2022/09/02/. URL:<http://incrc.org/uncrc>)
2. United Nations[웹사이트].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for all. 202209/02 .
https://www.ohchr.org/en/ohchr_homepage?gclid=Cj0KCQjw4omaBhDqARIsADXULuUV5uydkg0axlkjY7_S1S3HvZ8OshEr1PawoxU2ZiDIFEAlheT3i9EaAj7tEALw_wcB
3.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관계부처 합동 (2022). 2021 청소년백서. 관계부처 합동.
5. 관계부처 합동 (2022). 2021 청소년백서. 관계부처 합동.
6.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 관계부처 합동 (2022). 2021 청소년백서. 관계부처 합동.
9.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URL :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10. 관계부처 합동(201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관계부처 합동.
11.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URL :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12.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URL :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13.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URL :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14. European Commission[웹사이트]. 2022/04/30. The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European Child Guarantee
URL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rights-child/eu-strategy-rights-child-and-european-child-guarantee_en
15. European Commission[웹사이트]. 2022/04/30. The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European Child Guarantee
URL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rights-child/eu-strategy-rights-child-and-european-child-guarantee_en
16.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URL:

-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17. UNICEF[웹사이트]. Towards an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2/04/30. URL:
<https://www.unicef.org/eu/documents/towards-eu-strategy-rights-child>
 18.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URL: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19.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20.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21. Council of Europe[웹사이트]. The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22-2027).
2022/04/30. URL:
<https://www.coe.int/en/web/portal/-/the-new-strategy-for-the-rights-of-the-child-2022-2027-adopted-by-the-committee-of-ministers>
 22.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23.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24.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URL: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25.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URL: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26.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27.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28. 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웹사이트]. European Fundamental Rights.
2022/04./30/. URL: <https://fra.europa.eu/en/about-fra>
 29.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30.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31.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32.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pdf/3599.pdf/>
33. European Commission[웹사이트]. European Education Area Q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for all. 2022/04/30. URL: http://ec.europa.eu/education/school-education/doc/earlycom_en.pdf
34. European Commission(2008). Non-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A renewed commitment URL:<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8:0420:FIN:EN:PDF>.
35.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document/eu-agenda-rights-child-communication-commission-european-parliament-council-european/>
36. European Commission(2011). An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document/eu-agenda-rights-child-communication-commission-european-parliament-council-european/>
37. European Commission(2009). SOLIDARITY IN HEALTH: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IN THE EU. URL
:http://ec.europa.eu/health/ph_determinants/socio_economics/documents/com2009_en.pdf.
38.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636:FIN:EN:PDF>
39. European Commission(2020).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hild_rights_strategy_version_with_visuals3.pdf
40. European Commission(2020).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hild_rights_strategy_version_with_visuals3.pdf
41. European Commission(2020).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URL: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hild_rights_strategy_version_with_visuals3.pdf
42. European Commission(2010). Strategy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European Union.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573:FIN:EN:PDF>
43. European Commission(2010). Strategy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European Union.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573:FIN:EN:PDF>
44. European Commission(2010). Strategy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European Union.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573:FIN:EN:PDF>

45. European Commission[웹사이트]. European Education Area. Q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for all. 2022/09/01. URL: http://ec.europa.eu/education/school-education/doc/earlycom_en.pdf
46. Council of Europe(2010).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child-friendly justice. URL:<https://wcd.coe.int/wcd/ViewDoc.jsp?id=1705197&Site=CM>
47. European Commission[웹사이트].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2022/09/01. URL: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751&langId=en&pubId=74&type=2&furtherPubs=yes>
48. European Commission[2009]. SOLIDARITY IN HEALTH: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IN THE EU. URL: http://ec.europa.eu/health/ph_determinants/socio_economics/documents/com2009_en.pdf
49. European Commission[2009]. SOLIDARITY IN HEALTH: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IN THE EU. URL: http://ec.europa.eu/health/ph_determinants/socio_economics/documents/com2009_en.pdf
50.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636:FIN:EN:PDF>
51. European Commission(2020). Third report on the progress made in the fight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20) as required under Article 20 of Directive 2011/36/EU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GA/TXT/?uri=CELEX:52020DC0661>
52. UNICEF (2016).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a global concern, UNICEF.
53. UNICEF and European Union[웹사이트] Children's and young people's contribution to the new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hild Guarantee. 2022/09/01. URL: <https://www.unicef.org/eu/reports/report-our-europe-our-rights-our-future>
54. European Youth Portal[웹사이트]. European Youth Strategy. 2022/04/30/ URL: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strategyplatform_en
55. European Youth Portal[웹사이트]. European Youth Strategy. 2022/04/30/ URL: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strategyplatform_en
56. European Youth Portal[웹사이트]. European Youth Strategy. 2022/04/30/ URL: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strategyplatform_en
57. European Commission[웹사이트]. The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European Child Guarantee. 2022/09/01. URL: 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rights-child/eu-strategy-rights-child-and-european-child-guarantee_en

58. European Commission(2010). Strategy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European Union. URL: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573:FIN:EN:PDF>
59. European Youth Portal[웹사이트]. European Youth Strategy. 2022/09/01. URL: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strategyplatform_en
60. European Youth Portal[웹사이트]. European Youth Strategy. 2022/09/01. URL: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strategyplatform_en
61. European Youth Portal[웹사이트]. European Youth Strategy. 2022/09/01. URL: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strategyplatform_en
62. European Youth Portal[웹사이트]. European Youth Strategy. 2022/09/01. URL: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strategyplatform_en
63. European Youth Portal[웹사이트]. European Youth Strategy. 2022/09/01. URL: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strategyplatform_en